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54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25683호, 2014.11.4. 일부개정) 제41조에 의거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29.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 2015.07.29.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5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승진임용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3. 제1호 내지 2호 외의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②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③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이며, 연도별 상한점은 0.08점으로 하고 총합계는 1.0점으로 한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연간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①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 참조)

②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3.0점, 중등의 경우 2.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월평정점을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점의 항

목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지역급지별 기본점만 부여한다. 이 경우 가급지는 A, 나급지는 B, 다급지는 C, 라급지는 D지역의 기본점을 부여한다.

지 역	초등		중등		교육 행정기관	월평정점			비고
	도서	접적	도서	접적		기본점	부가점	계	
A	이작분교	연평초교 백령초교 북포초교 대청초교 소청분교		연평중·고 백령중·고 대청중·고		0.019	0.037	0.056	
B	삼산초교 해명초교 덕적초교 장봉분교 자월분교 신도분교 무의분교 승봉분교	교동초교 지석초교 난정초교 서도초교 불음분교	덕적중·고	교동중·고 서도중·고 불음분교		0.018	0.028	0.046	
C	영흥초교 금산분교 선재분교	양사초교 하점초교 송해초교 대월초교	영흥중 인천영흥고	강서중	서사 체험학습장	0.017	0.019	0.036	
D		선원초교 명신초교 불은초교 삼성초교 내가초교			강화교육 지원청	0.016	0.010	0.026	
E		강화초교 갑룡초교 합일초교		강화중 강화고 강화여중 강화여고	국화리 학생야영장	0.015	0.005	0.020	

-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감이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7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역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행정기관	일 평 정 점	월 평 정 점	항목 상 한 점
A		용유초	용유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홍왕체험학습장 해양환경체험학습장	0.00067	0.02	1.0
B	공항유치원 영종유치원	공항초, 삼목초 영종초, 운남초 운서초, 하늘초	공항중, 영종중 공항고, 인천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인천교육연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0.00050	0.015	
C		서화초, 연안초 용정초, 마곡초 상정초, 장수초 주원초, 김단초 금곡초, 단봉초 목향초, 봉수초 봉화초, 불로초 석남서초, 신석초, 신현초,, 신현북초 왕길초, 천마초	화도진중, 청천중 능허대중, 검단중 가좌여중, 동양중 백석중, 불로중 석남중, 신현중 신현여중, 원당중 검단고, 백석고 인천원당고 도화기계공고 인천하이텍고 인천제고		0.00033	0.01	

4.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에 따라 실시한 다면평가 ‘평가점’ 이 상위 50% 이내인 자(동점자 포함)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월 0.02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3점)의 평정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는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 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기술형 고등학교는 교사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 다.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는 3학년 담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 라.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생 지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 마.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해당자가 1명 미만인 학교는 1명으로 한다.

③ 『보직교사·전문직 근무경력』 가산점은 '보직교사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통합 학급 담임	0.00018	0.0053	1.0	통합학급담임경력은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의 판정을 받은 학생을 담임하는 교사에 해당되며, 교과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33점). 이 경우 항목 상한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초등	2005.02.28 이전 전입자	0.00070	0.021	1.25	
	2005.03.01 이후 전입자	0.00033	0.010		
중등	2005.03.01 이후	2주이상 6주미만 - 0.01점 6주이상 8주이하 - 0.02점			
보건, 특수	2005.03.01 이후				
유치원	2006.03.01 이후				

3.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수업연구 발표대회' 입상실적을 다음 표에 의거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구실적으로 평정된 입상 실적은 가산점에 중복하여 평정할 수 없다.

입상 실적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평정점	0.15	0.10	0.05	

⑥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문서실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급	대 상	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A	해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기사1급),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 서비스계 기술종목1단 또는 1급, 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1~3급	0.5	0.5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B	기능사2급, 서비스계 기술종목2~3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문서실무사2~3급, 항해사·기관사 4~6급, 운항사4~5급, 소형선박조정사	0.25		

⑦ 『인천교육 공헌실적』 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특기사항
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	0.00017	0.005	0.5	청소년단체는 2004.03.01 이후부터 적용 학생봉사동아리는 2016.03.01. 이후부터 적용
수업개선 선도교사	0.00017	0.005	0.5	2009.03.01. 이후부터 적용
중심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수업중심유치원담당교원	0.00017	0.005	0.5	
자율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2016.03.01. 이후부터 적용
담임교사 경력	0.00010	0.003	0.3	
원어민대체교사	0.00017	0.005	0.5	2011.02.28. 사업 종료
영재교육 담당교사	0.00017	0.005	0.5	2006.03.01.~2016.02.29.까지 적용 2016.03.01.이후 가산점 폐지
사이버학습배정형담임교사	0.00017	0.005	0.5	2009.03.01.~2016.02.29.까지 적용 2016.03.01.이후 가산점 폐지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0.00017	0.005	0.5	
장학지원단	0.00017	0.005	0.5	
인천정책자문위원	0.00017	0.005	0.5	
인천교원정책추진지원단	0.00017	0.005	0.5	2011.03.01.~2016.02.29.까지 적용 2016.03.01.이후 가산점 폐지

⑧ 평정기간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중복 경력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 중복 경력 처리 기준 〉

구분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경력 중복시 처리 방법
그룹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평정사유 2개 이상 중복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
	청소년단체 지도경력	영재교육 지도경력	2008.12.31이전 경력은 중복 인정, 이후부터는 택일
	도서·벽지 경력	학교교육 유공경력	2015.03.01.~2017.02.28.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농어촌 경력	학교교육 유공경력	
그룹간	연구학교경력 (공통가산점)	연구·정책추진학교경력 (선택가산점)	택일
		교육실습 대응·협력학교 근무경력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보직(주임)교사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보직(주임)교사 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통합학급 담임교사)	택일 (2002.01.01이후부터 적용)
	보직(주임)교사 경력	담임교사 경력	택일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통합학급 담임교사)	담임교사 경력	택일
	장학사·교육연구사경력	도서·벽지경력(학교, 기관)	택일
	도서·벽지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도서·벽지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농어촌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농어촌 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학교교육 유공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2015.03.01 이후부터 적용)

제4장 시행세칙 등

제6조(시행 세부 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08. 06.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에는,

- ①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한하여 '도서·벽지경력' 항목 상한점과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그룹 상한점은 3.5점까지 인정한다.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동 그룹의 각 항목 상한점은 그대로 적용하되, 그룹 상한점에 한하여 3.5점까지 인정한다.
-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2.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5조 제④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에는,

-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수아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 ② 2006년 10월 31일 이전의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0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7. 19.)

제1조(시행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3장 제5조(선택가산점) 제②항의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 제4호 나목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2013.03.01.자 이후 과학고 운영교사로 하며, 일반고 운영교사는 제5조 제②항 4호 다목을 적용한다.

부칙(2013. 08.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 ①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나 그룹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인천하늘초등학교와 공항유치원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는 A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5조 제⑧항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도서·벽지경력’ 과 ‘학교교육유공경력’ , ‘농어촌경력’ 과 ‘학교교육유공경력’ 의 중복인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 ② ‘학교교육유공경력’ 과 ‘특수교육대상자지도경력’ 의 중복경력 택일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0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제3호의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② 인천검암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자로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 C구역 학교인 인천검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개원됨에 따라 개교일로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특수지역 교육활동 경력」 가산점 C구역을 적용한다.

③ 인천백석초등학교는 2015년 9월 1일자로 서구 당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개교일을 기준으로 「특수지역 교육활동 경력」 가산점 대상학교 지정을 해제한다.

※ 별표

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

※ ()안은 중등

그룹명	항 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그룹 상한점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도시·벽지 경력	A지역 0.00187 B지역 0.00153 C지역 0.00120 D지역 0.00087 E지역 0.00067		A지역 0.056 B지역 0.046 C지역 0.036 D지역 0.026 E지역 0.020		2.5 (2.0)	3.0 (2.75)
	농어촌 경력	0.00067		0.020		1.5	
	특수지역 교육활동 경력	A구역 0.00067 B구역 0.00050 C구역 0.00033		A구역 0.0200 B구역 0.0150 C구역 0.0100		1.0	
	학교교육 유공경력	0.00073		0.022		2.5 (2.0)	
보직교사 · 전문직 근무 경력	보직교사 경력	0.00070		0.021		1.75	1.75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	0.00070		0.021		1.25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특수학교 0.00070 특수학급 0.00035 통합학급 0.00018		특수학교 0.0210 특수학급 0.0105 통합학급 0.0053		1.0	1.0
교육감인정 연구경력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 학교	0.00033		0.01		1.25	1.25
	교육실습대용 협력학교 근무경력	초		초		1.25	
		05.2.28이전	05.3.1이후	05.2.28이전	05.3.1이후		
		0.00070	0.00033	0.021	0.01		
		중등,보건,특수,유치원					
		2-6주	0.00033	2-6주	0.01		
		6-8주	0.00067	6-8주	0.02		
	교실수업개선 연구 경력	1등급 : 0.15, 2등급 : 0.10, 3등급 : 0.05				1.25	
국가기술자격증소지		A등급 : 0.5, B등급 : 0.25				0.5	0.5
인천교육 공헌실적	수업개선 선도교사	0.00017		0.005		0.5	1.0
	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	0.00017		0.005		0.5	
	중심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자율학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담임교사 경력	0.00010		0.003		0.3	
	수업중심유치원 담당교사	0.00017		0.005		0.5	
선택가산점 총합계							8.5 (8.25)

※ 『도시·벽지 경력』 항목상한점은 2015.2.28까지는 2.0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농·어·촌 경력』 가산점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 항목 상한점까지만 인정한다.(2002.1.1~2011.2.28까지는 1.0점, 2011.3.1~2015.2.28까지는 1.2점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도시·벽지 경력』 및 『농·어·촌 경력』 과 『학교교육 유공경력』 50% 중복 인정은 2015.3.1.~2017.2.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